

제 주 지 방 법 원

판 결

사 건 2008가단4727 채무부존재확인
원 고 □□화재보험 주식회사
피 고 1. 현○우
2. 현○여
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
담당변호사 신용인
변 론 종 결 2008. 8. 19.
판 결 선 고 2008. 9. 9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2007. 9. 22. 03:45경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소재 노상에서 발생한 제주27거4○○8호 차량의 교통사고 중 김○홍의 상해로 인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자기신체사고 담보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대리운전업체를 운영하는 피고 현○우와 사이에 보험기간 2007. 1. 26. 24:00부터 2008. 1. 26. 24:00까지로 하는 자동차취급업자(수탁자동차) 보험계약(이하 '이 사건 보험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한 보험자이다. 피고 현○여는 피고 현○우가 운영하는 대리운전업체 '미○사'의 대리운전 기사이다.

나. 피고 현○여는 2007. 9. 22. 03:45경 소외 김○홍의 의뢰로 그 소유의 제주27거4○○8호 차량(이하 '이 사건 사고차량'이라 한다)을 대리운전하여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2리 방면에서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Y자형 교차로에서 직진한 과실로 위 사고차량이 전방 도로변 도랑으로 추락하는 사고(이하 '이 사건 사고'라 한다)가 발생하였다. 위 사고로 인하여 위 사고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였던 김○홍이 부상을 입었다.

다.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, 피고 현○우와 피고 현○우가 지정하는 대리운전기사인 피고 현○여는 위 보험의 피보험자이고, 피보험자가 자동차관리업무를 위하여 수탁받아 관리중인 자동차는 피보험자동차로 지칭된다. 위 보험계약에 의하면, 원고는 대인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약관의 규정에 의거하여 보상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. 한편, 위 보험계약 중 수탁자동차 위험담보 특별약관 제4항 (2)호 ③은 '대인배상의 경우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'를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다.

[인정근거] 다통없는 사실, 갑1 내지 3호증

2.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

가. 주장 및 쟁점의 정리

(1)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 김○홍이 이 사건 사고로 부상을 입음으로써 피고들이 김○홍에 대하여 부담하는 배상책임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시 김○홍의 부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. 위 기초사실에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대리운전 기사인 피고 현○여가 이 사건 차량의 운전 중 과실로 그 소유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므로, 일응 위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른 면책대상이 된다.

(2)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원고의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 체결시 위와 같은 면책약관을 명시·설명하여 주지 아니하였으므로, 원고가 피고들에게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. 따라서 이하에서는 원고가 명시·설명의무 위반으로 위 면책약관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 지 및 원고의 보험금지급의무 발생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.

나. 원고의 명시·설명의무 위반 여부 및 보험금지급의무 발생 여부

(1)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, 보험료율의 체계,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·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,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·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다(대법원 2005. 10. 28. 선고 2005다38713,38720 판결 등 참조).

(2) 기초사실 기재 각 증거들 및 증인 고○주의 증언에 의하면, 원고의 보험모집인 고○주는 피고 현○우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대인사고에 대하여 무한으로 보상이 된다고 설명하였을 뿐, 차주와 그 외의 제3자의 경우로 나누어 배상책임이 달라진다는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고, 고○주 스스로도 위와 같은 구별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, 고○주가 위 사고 이후 원고의 보상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보상이 가능한지를 문의하자, 위 팀장도 출근해서 확인해 봐야겠다고 대답한 적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,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보험모집인 고○주는 대리운전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대리운전 도중 부상을 입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리운전기사 및 그 고용주의 손해배상책임은 보험금의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약관의 내용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인 피고 현○우에게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 명시·설명의무를 다 하지 못하였으므로, 원고는 위 면책약관의 내용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.

(3) 나아가, 증인 고○주의 증언 및 을1호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, 원고의 경우에도 대리운전시 발생한 자동차 소유자의 부상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보상해 주었던 적이 있고, 위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보상하는 약관규정을 채택하고 있는 보험사도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,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 현○우가 위 면책약관의 내용을 이미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거나, 위 면책약관의 내용이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다.

(4) 그러므로, 원고는 김○홍의 부상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약관에서 정한 대인배상책임의 범위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따라서 기초사실 기재 사고 중 김○홍의 부상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약관에 따른 대인배상의 범위에 의한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여 그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(원고는 약관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면책된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을 뿐, 나아가 김○홍의 부상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대한 판단까지는 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, 위와 같이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이상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함이 상당하다).

판사 김창권 _____